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출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비율 및 시설사용료 등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로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정비(안 제11조)

- 1)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30% 감면)
- 2)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둘째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10% 감면)
- 3) 구에 거주하는 우수자원봉사자(10% 감면)

나. 시설 사용료 정비(안 별표 1)

- 1) 국산 그랜드 및 업라이트 피아노 사용료 삭제
- 2) 음향장비 스피커(2대 기본) 및 무대시설 무용매트 사용료 신설
- 3) 공연장 및 전시실 냉난방기 의무사용기간 명시 등

- 다. 맞춤법 등 오류 항목 정비
-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3. 9. 27. ~ 10. 17.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동의 결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문화시설의 사용,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자체행사”란 자체 공연 · 전시 · 영화상영 등을 말한다.
5. “문화강좌프로그램”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술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수강료”란 문화강좌프로그램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을 “(자체행사 및 문화강좌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을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장”으로,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여가선용”으로, “취미프로그램”을 “문화강좌프로그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4호에 규정된”을 “관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체행사의 특성에 따라 입장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취미프로그램”을 “문화강좌프로그램”으로,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내”를 “범위”로,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를 “부속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본시설 :”을 “기본시설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속설비 :”를 “부속설비 :”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전단 중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사용허가수강등록을 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허가나 수강등록을 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관내 질서유지”를 “회관 내 질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회관시설”을 “회관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종교집회”를 “종교 집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상품선전”을 “상품 선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제1항 제3호”를 “제9조제1항 제3호”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사용정지,변경,기타”를 “사용 정지, 변경,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그 밖에”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 할”을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시 [별표1]의 기준에 의한”을 “사용 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오전 : ”

을 “오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오후 :”를 “오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야간 :”을 “야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을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전일”을 “사용일 전”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면제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를 “대구광역시 또는 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회관이 필요에 의하여”를 “회관의 필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서구”를 “구에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

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2.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30% 감면)
13.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둘째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10% 감면)
14. 구에 거주하는 우수자원봉사자(10% 감면)
- 제1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하여 사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미프로그램 사용자가”를 “문화강좌프로그램 수강생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13조의 제목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을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위원으로”를 “위촉직위원으로”로, “위촉위원은”을 “위촉직위원은”으로, “관련분야”를 “분야”로,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위원회담당 6급이 된다”를 “위원회 담당 관리운영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를 “문화예술강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유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회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전임위원의 임기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 만료 전이라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질병 또는 기타”를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품위손상”을 “그 밖에 품위 손상”으로 한

다.

제19조 중 “위촉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내”를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에 예산의 범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회관에는 회관운영”을 “관장은 회관 운영”으로, “둘 수 있으며 관장이 위촉하되”를 “위촉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미교실, 교육강좌”를 “문화예술강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초빙강사”를 “제2항에 따라 초빙한 전문가 등”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1조 중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를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손상하게 한 자”를 “손상한 경우”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를 “장치나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사용자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시설에 대하여”로, “동의없이”를 “동의 없이”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자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자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사람은 관장의 지도·감독”으로 한다.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시설 사용료(제10조와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공연(영화)	행사	
공연장	오전		60,000	9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단, 전시실은 제외)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가) 30분미만 초과시 당해기준 사용료의 20%가산 나)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해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오후	80,000	120,000	
	야간		100,000	150,000	
전시실	1일		30,000		
야외공연장	1회		3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부속설비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파 아 노	외국산 그랜드	1회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조 명	기본	1회	공연 50,000 행사 30,000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무빙라이트	1회	50,000	
음 향	무선마이크 (2대 기본)	1회	10,000	1대 초과 시 10,000원 가산,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3대 기본)	1회	10,000	1대 초과 시 5,000원 가산
	모니터 스페커 (2대 기본)	1회	10,000	1대 초과 시 10,000원 가산
	기본음향기기	1회	20,000	
무 대 시 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덧 마루	1회	20,000	사용자 설치 및 철거
	보면대 (10개 이상 사용시)	1일	10,000	
	무용매트	1일	50,000	테이프 포함 금액
빔프로젝트	1회	20,000		
냉 난 방	1회	100,000	의무사용기간: 1, 2, 6, 7, 8, 12월	
전시실 냉·난방	1일	30,000		
스 모 그 기	1회	10,000	운영 및 재료비 사용자 부담	
특 수 전 기 료	1회	30,000		외부 설비 사용 시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

※ 운용인력은 사용자 부담

[별표2]

문화강좌 수강료(제4조와 관련)

(단위: 원)

구 분	과 목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프로그램	문화강좌	30,000 ~ 300,000	3개월 과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수강료 징수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문화시설”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취미교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p> <p>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p> <p>3.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자체행사”라 함은 자체 공연 · 전시 · 영화상영 ·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 ----- ----- 필요한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문화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p> <p>2. “회관의 사용”이란 문화시설의 사용,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p> <p>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자체행사”란 자체 공연 · 전시 · 영화상영 등을 말한다.</p> <p>5. “문화강좌프로그램”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p>

<p>5. “취미프로그램”이라 함은 구민의 예술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미 교실과 구민의 건강 및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스포츠교실을 말한다.</p>	<p>이라 한다)의 예술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을 말한다.</p>
<p>6. “이용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수강료”라 함은 취미프로그램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을 말한다.</p>	<p>6. “이용자”란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수강료”란 문화강좌프로그램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을 말한다.</p>
<p>제3조(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3조(자체행사 및 문화강좌프로그램)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장-----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여가선용----- 문화강좌프로그램-----.</p>
<p>제4조(입장료 및 수강료) 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체행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제4조(입장료 및 수강료) ① 관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 ----- ----- . 이경우 자체행사의 특성에 따라 입장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p>
<p>② 취미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강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p>	<p>② 문화강좌프로그램 ----- ----- ----- .</p>
<p>제5조(대관의 범위) 회관의 자체</p>	<p>제5조(대관의 범위) -----</p>

<p>행사에 지장이 없는 <u>범위내</u>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u>부속설비</u>(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u>범위</u> ----- ----- <u>부속설비</u> ----- ----- ----.</p>
<p>1. <u>기본시설</u> :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p> <p>2. <u>부속설비</u>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u>기타</u> 행사 · 집회에 필요한 <u>일체의</u> 부속기기와 냉 · 난방시설</p>	<p>1. <u>기본시설</u>: ----- ----- 2. <u>부속설비</u>: ----- ----- <u>그 밖에</u> ----- ----- <u>모든</u> ----- -----</p>
<p>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p>
<p>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p> <p>2. 기타 우리구외 거주자로서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p>	<p>----- ----- <u>사람은</u> ----- ----- ----- . ----- ----- ---.</p>
<p>제7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u>자</u>(이하 “<u>사용자</u>”라 한다)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7조(사용허가) ----- ----- ----- ----- ----- ----- ---.</p>

<p>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수강등록을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관내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 5. (생략) 6. 신청자가 제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기타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p>제9조(허가취소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 	<p>제8조(사용의 제한) ----- 어느 하나에 ----- 사용허가나 수강등록을 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관 내 질서 ----- 2. 회관 시설 ----- 3. 종교 집회 ----- 4. ----- 상품 선전 -- 5. (현행과 같음) 6. ----- 제9조제1항제3호 -- ----- 따른 ----- 7. 그 밖에 ----- <p>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 어느 하나에 ----- 사용 정지, 변경, 그 밖에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따른 ----- 2. -----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그 밖에 -----
--	---

가능 할 때

3.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6.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대관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항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 --
 4. 거짓 --
 5. ----- 어느 하나에 --
 6. (현행과 같음)
-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용 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 사용 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

1. 오전: -----
 2. 오후: -----
 3. 야간: -----
-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의 삭제

③ 사용료는 사용일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걸쳐 사용전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2. 회관이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
3. 회관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단,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 성 관람물의 공연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 배한다.
4. 서구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

③ ----- 전까지 -----
-----.

----- 사용일 전
-----.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어느 하나에 ----- 면제할 수 있
다.

1. 대구광역시 또는 구

2. 회관의 필요에 따라

3. -----

<단서 삭제>

<삭 제>

를 출산한 가정

5. 서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50%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

5. 구에 있는 -----

③ ----- 어느 하나에 -----
----- 범위-----.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

람(50%감면)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12.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 (20%감면)

<신 설>

<신 설>

13. (생 략)

람(50% 감면)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감면)

12.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30% 감면)

13.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둘째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10% 감면)

14. 구에 거주하는 우수자원봉사자(10% 감면)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p>제12조(사용료, 수강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u>인하여 사용이 불가능</u>하게 된 때 2. (생략) 3. 대관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u>취미프로그램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u> 4.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p>제13조(<u>운영자문위원회 설치</u>) 관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u>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u>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p>	<p>제12조(사용료, 수강료의 반환) -----. -----. -----. -----. 1. ----- <u>그 밖에</u> ----- ----- <u>사용</u>----- ----- 2. (현행과 같음) 3. ----- ----- <u>문화강좌프로그램 수강생이</u> ----- ----- 4. <u>그 밖에</u> ----- -----</p> <p>제13조(<u>운영자문위원회 설치</u>) ----- ----- ----- <u>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설치·운영-----.</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u>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②-----</p>
--	---

<p>원장은 <u>위원중</u>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u>위촉위원</u>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팀장, 여성아동팀장이 되며, <u>위촉위원</u>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u>관련분야</u> 등에 학식과 <u>사회경험이 풍부한 자</u>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p> <p>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며, 간사는 <u>위원회 담당6급</u>이 된다.</p>	<p>----- <u>위원 중</u>-----.</p> <p>③----- <u>위촉직위원</u>으로 -----</p> <p>-----</p> <p>--- <u>위촉직위원은</u> -----</p> <p>----- <u>분야</u> -----</p> <p>--- <u>경험이 풍부한 사람</u> -----</p> <p>-----.</p> <p>④-----</p> <p>----- <u>1명</u>-----</p> <p><u>위원회 담당 관리운영팀장으로</u></p> <p><u>한다.</u></p>
<p>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회관의 <u>취미교육 및 교양강좌</u>에 관한 사항 3. <u>기타</u> 회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p>제15조(위원회의 기능) -----</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문화예술강좌</u>----- 3. <u>그 밖에</u> -----
<p>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u>유고가 있을 때</u>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u>부득이한 사유로</u></p> <p><u>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p> <p>-----.</p>

<p>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u>필요에</u>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제17조(회의) ①----- <u>필요한</u> 경우 회의-----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위원의 임기) ①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u>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위원의 잔임기간</u>으로 한다.</p>	<p>제18조(위원의 임기) ① <u>위촉직위원</u>----- ----- ----- ----- -----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u> <u>기간</u>---.</p>
<p>② <u>위촉위원</u>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u>임기만료전이라</u> 도 해촉할 수 있다.</p>	<p>② <u>위촉직위원</u>----- <u>어느</u> <u>하나에</u> ----- <u>임기 만료 전이라</u> <u>도</u> -----.</p>
<p>1. 장기치료를 요하는 <u>질병</u> 또는 <u>기타</u>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p>	<p>1. ----- <u>질병이나</u> <u>그 밖에 부득이한</u>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u>기타 품위손상</u>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p>	<p>3. <u>그 밖에 품위 손상</u> -----</p>
<p>제19조(위원 실비변상) <u>위촉위원</u>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위원 실비변상) <u>위촉직위원</u>에게는 회의 참석 시에 예산의 범위----- <u>그 밖에</u> -----.</p>
<p>제20조(운영요원) ① <u>회관에는 회관 운영에</u> 필요한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면</p>	<p>제20조(운영요원) ① <u>관장은 회관 운영</u>----- ----- ----- ----- ----- <u>위촉할 수 있으</u></p>

<p><u>관장이 위촉하되</u>, 운영요원 임기,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관장은 <u>취미교실</u>, <u>교육강좌</u>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u>초빙강사</u>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내</u>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1조(운영요원 실비변상) 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u>전문직 교재연구사</u>, 전임강사는 예산의 <u>범위내</u>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2조(운영요원 해촉) 관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u>1에</u>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방공무원법</u>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u>이유없이</u>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 	<p>면----- ----- -----.</p> <p>②---- <u>문화예술강좌</u> ----- ----- ----- -----. ③ <u>제2항에 따라 초빙한 전문가</u>----- <u>범위</u>----- -----.</p> <p>제21조(운영요원 실비변상) ----- ----- ----- <u>전문직교재연구</u> <u>사</u>, 전임강사에게 예산의 <u>범위</u>-----.</p> <p>제22조(운영요원 해ழ) ----- ----- <u>어느</u> <u>하</u> <u>나에</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방공무원법</u>」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2. ---- <u>이유 없이</u>----- ----- <u>경우</u> 3. ----- <u>손</u>
--	---

<p><u>상하게 한 자</u></p> <p>제2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p> <p>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사용자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p> <p>제24조(사용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p>	<p><u>상한 경우</u></p> <p>제23조(사용자의 설비) ① ----- 장치나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 ----- ----- ----- ----- ----- ----- -----.</p> <p>② 제1항에 따라 ----- ----- ----- ----- ----- ----- -----.</p> <p>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사용자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p> <p>제24조(사용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p>
---	---

<p>를 <u>태만히</u>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장의 <u>동의없이</u> 그 권리를 <u>타인에게</u>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p>	<p>-- <u>게을리</u> ----- ----- -----.</p> <p>③----- <u>시설에 대하여</u> ----- ----- <u>동의 없이</u>----- <u>다른 사람에게</u>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p>
<p>제25조(입장권의 관리) ① 사용자는 그 사용 행사를 관람하려는 <u>자로부터</u>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25조(입장권의 관리) ①----- ----- <u>사람으로부터</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26조(입장의 제한)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2. (생략)</p> <p>3. <u>타인에게</u>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p> <p>4. (생략)</p> <p>5. <u>기타</u> 관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다른 사람</u>----- --</p> <p>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제27조(회관의 임대) ① 관장은 공</p>	<p>제27조(회관의 임대) ①-----</p>

<p>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p> <p>② 임대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범위 ----- ----- ----.</p> <p>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른다.</p> <p>③ 제1항에 따라 ----- --- 사람은 관장의 지도·감독-----.</p> <p><삭 제></p>
--	---